

가족 돌봄 & 의학적 휴가 & 임신 장애 휴가



공정 고용 및 주택부

공정 고용 및 주택부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의 임무는 고용, 거주 및 공공 편의 시설 제공에 있어 불법적인 차별로부터 그리고 증오 폭력 및 인신 매매의 범죄 행위로부터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1993년 캘리포니아 가족의 권리 법(California Family Rights Act of 1993)에 따라 직원은 가족 돌봄 또는 자녀 출산, 입양 또는 위탁 양육 배치 또는 본인이나 자녀, 부모, 배우자의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인한 의학적 휴가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법은 임신으로 인한 장애 휴가 요청을 고용주가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993년 캘리포니아 가족의 권리 법(CFRA)에 따라 직원이 12개월 이상 해당 회사에 근무했고 휴가 시작을 원하는 날짜 전 12개월 동안 최소 1,250시간을 근무한 경우, 그리고 회사가 해당 직원의 근무지 또는 근무지의 75마일 이내에서 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직원에게는 가족 돌봄 또는 의학적 휴가(CFRA 휴가)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 휴가는 자녀 출산, 입양 또는 위탁 양육 배치 또는 본인의 심각한 건강 상태나 자녀, 부모, 배우자의 심각한 건강 상태에 대해 12개월의 기간 동안 최대 12주까지입니다. 회사가 직원의 근무지 또는 근무지의 75마일 이내에서 5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지만, 직원의 근무지 또는 근무지의 75마일 이내에서 최소 2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새로운 부모 휴가법(New Parent Leave Act, NPLA)에 따라 직원은 자녀 출산, 입양 또는 위탁 양육 배치로 인한 가족 돌봄 휴가의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CFRA 휴가와 비슷하게 NPLA 휴가는 12개월 동안 최대 12주까지입니다. 법에 따라서는 무급 휴가만을 제공하지만, 특정 상황에서 CFRA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누적되어 있는 유급 휴가를 사용하도록 직원이 선택하거나 고용주가 요청할 수 있으며, NPLA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직원은 누적되어 있는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FRA 또는 NPLA 휴가 자격이 없더라도, 임신, 출산 또는 관련된 의학적 상태로 인한 장애가 있다면, 실제 장애 기간에 따라 최대 4개월까지 임신으로 인한 장애 휴가를 사용할 자격이 있습니다. CFRA 또는 NPLA의 자격이 있는 경우, 임신으로 인한 장애 휴가 및 자녀 출산으로 인한 CFRA 또는 NPLA 휴가를 모두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두 휴가는 모두 휴가 종료 시, 임신으로 인한 장애의 경우 동일한 직급으로, CFRA 또는 NPLA의 경우 동일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복직을 보장하며, 이는 법에 의해 허용되는 모든 변호의 대상이 됩니다.

가능한 경우, 예측 가능한 상황(예를 들어, 출산 예정일 또는 본인이나 가족의 의학적 치료 계획)에 대해 최소 30일 사전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의 경우, 휴가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즉시 구두상으로라도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 규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통지 정책을 준수할 때까지 요청된 휴가에 대한 연기의 사유가 되고 연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장애 또는 심각한 건강 상태로 인한 휴가를 허용하기 전에 의료 제공자의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승인하기 전에 심각한 건강 상태에 있는 자녀, 부모 또는 배우자의 의료 제공자가 발행한 증명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휴가는 간헐적 업무 또는 줄어든 업무 스케줄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 출산, 입양 또는 위탁 양육 배치로 인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휴가의 기본 최고 기간은 2주이며, 해당 휴가는 출산, 입양 또는 위탁 양육 배치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가족 돌봄 또는 임신으로 인한 장애 휴가를 사용하면 특정 혜택 및 연공 체계 날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휴가 및/또는 휴가가 연공 체계 및 혜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DFEH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잡으시려면, 아래 커뮤니케이션 센터로 연락하십시오.

합당한 편의가 필요한 장애가 있는 경우, DFEH는 청각 장애 또는 난청이 있거나 언어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전화 또는 캘리포니아 중계 서비스(711)를 통해 접수 내용을 문자로 전환하여 도움을 드립니다. 아래 연락처로도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

수신자 부담: (800) 884-1684
TTY: (800) 700-2320
contact.center@dfeh.ca.gov
www.dfeh.ca.gov